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62 발의년월일: 2021. 04.

발 의 의 원 : 김대현 의원

안경은 의원

김성태 의원

김지만 의원

이태손 의원

임태상 의원

강성환 의원

박우근 의원

1. 제안이유

-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방법 확대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개정 시행 ('21.2.19)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공공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을 조례에 적용하여 서민 임대주택 확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계 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 반영 등(안 제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별표1)
- 나. 공공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 확대(안 제35조)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
 -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10% ~ 20% 미만인 경우 용적률 완화산식 신설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붙임1 참조)
- 나. 관계 법령(붙임2 참조)
-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 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로부터"를 "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감정평가업자를"을 "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감정평가업자"를 "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평가법인등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평가법인등의 추천"으로, "감정평가업자로"를 "평가법인등으로"한다.

제18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95조를 준용 한다.

제19조 중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를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으로 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3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80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해당 공공임대주택비율×2.5)"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의 제목 중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기준"을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표 (25)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로 하며, 같은 표 15의 점수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 참여횟수

별표1 제3항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감정평가실적

별표1 제4항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 참여규모

별표 1 제4항 기참여횟수란 "기참여횟수"를 "기 참여횟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기준(제6조 관련)

구분	항목		심사기준						점수	
평가법인등	① 법인(사무소) 규모	구분	사무소 12이상	12.16	사무소 8미만	미만	30명 미만	개인	10	
경기됩인공 규모 (25)		_ 평점 	10	8	6	4	3	2		
	② 권역별 소속	구분	12명 이상	10년 이것	-	명 상	3명 이상	3명 미만	15	
감정평가사 수	감정평가사 수	평점	15	12	,	9	6	3	10	
	③ 감정평가	구분	10건 이상	5건 이상		건 상	1건 이상	없음	25	
감정평가실적 (25)	실적(최근 3년)	평점	25	20	1	5	10	5	30	
기 참여규모 ④ 기 참여횟수 (25) (최근 3년)	④기 참여횟수	구분	없음	1ই	2	회	3회	4회 이상	0.5	
	평점	25	20	1	15 10 5			25		
		구분	없음	1회	3회	5회	7회	8회		
법규준수 등 이행도(25)	⑤ 행정처분 (최근 3년)	평점	25	이하 20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상 0	25	
합계							100			

① 법인(사무소) 규모

평가지표	법인(사무소) 규모				가중치	10%		
지표정의		전국적인 감정평가 업무처리 능력을 지닌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국 적인 사무소 및 소속 평가사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 감정평 개인시 – 50명 (무소로 구분	기준으로 50 -하고, '사가 있는 만, 8개 미만 50명 이상 사무소 8개 이상)명 이상, 법인은 전	30명 이상 5 국적인 사무소 분한다. 30명 이상 50명 미만		12개 이상,	
세부 평가기준								

② 감정평가사 수

평가지표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가중치		15%	
지표정의	실질적으로 정비사업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의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해 대구광역시 권역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사무소의 조직과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2명 이상, 10명 이상, 5명 이상, 3명 이상, 3명 미만으로 구분한다. 구분 12명 이상 10명 이상 5명 이상 3명 이상 3명 미만						명 이상, 3명 3명 미만
	평점 15 12 9 6 3					3	
세부 평가기준							

③ 감정평가실적

평가지표	정비시	l업 감정평가	건수	가중치		25%	
지표정의	감정평가업자의 정비사업 감정평가에 대한 처리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정비 사업 감정평가의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정비사업 감정평가 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점을 결정한다.						
지표산식	구분	10건 이상	5건 이상	3건 이상	1건 이상	計 없음	
	평점 25 20 15 10 5					5	
 세부	정비사업 감정평가 처리실적이라 함은 감정평가서상 동일한 평가목적의 처리						
평가기준	실적을 말하며, 최근 3년간의 평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기 참여규모

평가지표	7	가중치		25%			
지표정의	수임의 형평성을 위하여 최근 3년간 정비사업 평가에 참여한 횟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참여횟수가 높을수록 하향 평가한다.						
	수임 형평성은 참여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지표산식	구분	없음	1회	2회 3회		হী	4회 이상
	평점 25 20 15 10 5					5	
-							
세부 평가기준	최근 3년간 대구권역 내(대구광역시 소재) 참여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⑤ 행정처분

평가지표	행정처분 횟수				가중치		25%	
지표정의	법인(사무소)의 감정평가 관련법규 준수의무 등 이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징계 횟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징계횟수가 높을수록 하향 평가한다.						비하여 징계	
	징계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지표산식	구분	없음	1회 이하	3회 이하	5회 이하	7회 이하	8회 이상	
	평점 25 20 15 10 5 0					0		
 세부								
평가기준								

(붙임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u>감정평가업자의</u> 선정기준 등) ① 영 제10조제4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u>감정평가업자</u> 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이하 "평가법인등" 이라 한다)
1. 구청장은 <u>감정평가업자로부</u> <u>터</u>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u>감정</u> <u>평가업자를</u> 선정하며, 그 세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u>평가법인등으로부터</u> <u>평가법인등을</u>
가. <u>감정평가업자</u> 의 규모 나. ~ 라. (생 략) 2. <u>감정평가업자가</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u>평가법인등</u> 나. ~ 라. (현행과 같음) 2. <u>평가법인등이</u>
가. ~ 다. (생 략) 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u>감</u>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협 회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u>감정평</u> 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	등의 추천평가법인등으로제18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u>다만</u>, 회의록 공개는 「대구광역시 도 시계획 조례」제95조제2항을 준 용한다.
- 제1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및 그 밖의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5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 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49조제1 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단서 신설〉

〈신 설〉

- 제19조(수당 등) -----
 - ---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 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
- 제35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 주택의 건설 비율) <u>①</u> -----

 - 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80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해당 공공임대주택비율×2.5)"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없다.

(붙임2)

관계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2020. 8. 18.>

- 1.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 2.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
- ② 사업시행자가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2020. 8. 18.〉
-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세대면적, 세대수 등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 1.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2.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④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인수자 간협의로써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2020. 6. 9.〉
- ⑤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 ⑥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 「주택법」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 4. 23.〉[시행일: 2021. 2.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0조(빈집의 철거보상비) ①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u>「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u>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한다.
- ② 빈집 소유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등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시장·군수등이 제9조제4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 2. "감정평가" 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 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3.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11. 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12. 일반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13.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
-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다만, 공동주택은 250퍼센트 이하, 주거복합건축물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7. 중심상업지역 : 1천 300퍼센트 이하

- 8. 일반상업지역 : 1천 퍼센트 이하
- 9.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 10.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5.20>
-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 제9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은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은 그 사유가 없어지면 공개대상이 된다.(개정 2011.10.10조례 제4285호)(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4호), 〈개정 2020.7.10.〉
- ③ 회의록의 공개는 영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20.7.10.〉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7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 에 상당하는 여비
 - 나. 그 밖에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 3.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라 인사위원이 시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